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공동협약 추진 현황 및 대응



이윤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I. 서언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등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산업활동에서 콘크리트, 흙 등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 병원 및 연구소 등과 같이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데 따른 부산물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작업복, 종이, 기기부품, 공구 등과 같은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생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재처리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개개의 국가별로 추진해온 종전의 원자력안전성증진개념에서 세계중심의 안전성 확보개념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새로운 협약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협약”이 1996년 10월 24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그 뒤를 이어 1997년 9월 서명 개방된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 협약”이라 한다.)」(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이 2001년 6월 18일 발효되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달성·유지하는데 있으며, 체약국들은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반에 걸쳐 방사선 위해로부터 일반대중, 사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 기술기준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방사성폐기물 안전원칙을 기초로 하여 체약국에서는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이행을 통하여 상기 시설의 운영 및 폐쇄까지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에 대한 공동협약의 배경과 의의, 국가보고서 작성과정, 제1차 검토회의 등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2.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 현황

2.1 협약의 배경

1986년 4월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인접국에까지 방사능 낙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전 사고의 광역성 즉, 안전문제의 국가경계간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목표를 포함하여, 원자력 안전성의 모든 국면에 대해 통합된 국제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하여 IAEA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침과 기준들을 활용하여, 그러한 공식적인 국제적 접근의 필요한 요소에 대한 초안의 준비를 조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9월에 개최된 IAEA 제37차 정기총회에서 “Waste Management Safety Fundamentals”的 개발이 종료되는 데로, IAEA 사무총장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를 즉시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어서 이듬해 6월 17일 개최된 외교관 회의에서도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즉시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시설에 관한 “원자력안전 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이 성립('94. 6)된데 이어 IAEA는 같은해 9월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원자력이용기술과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치분을 위해 확실한 관행들이 수립·시행될 것을 보장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의 조기 착수 결의문 결의안 GC(XXXVIII)/RES/6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사무총장은 국제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협약에 있어 가능한 요소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해 1995년 2월에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 9월까지 7차 전문가그룹 회의 및 비공식회의, OECD/NEA, UNEP, EU 및 WHO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외교회의에서 협약안을 최종 표결하여 채택하였으며, 현재 각국의 서명 및 비준을 위해 개방된 상태이다

2.2 협약의 목적 및 범위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의 목적은, 안전관련 기술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성·유지하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수단이 존재함을 보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걸쳐 전리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달성함을 보장하는데 있다. 또한 방사선 영향을 수반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단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완화하는데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가 민수용 원자로의 운전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에 적용한다. 재처리활동의 일부로서 재처리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체약당사자가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일부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민간의 사용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된 밀봉선원이 아니거나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이 협약의 목적에 맞는 방사성폐기물로 선언되지 않은 한, 단지 자연 발생적인 방사성물질만을 함유하고 핵연료 주기에서 발생되지 않은 폐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협약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이 협약의 목적에 맞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군사·방위 프로그램 내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협약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전적으로 민수용 프로그램 내로 영구히 이전되고 관리되는 경우에는 군사·방위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에 적용한다.

무엇보다도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에 대한 공동협약의 주요 초점은, 상기한 의무사

항들에 대한 이행현황을 각 체약국은 국가보고서로 작성하여 매 3년마다 IAEA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차검토가 체약국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2.3 협약의 의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은 기본적으로 강제적(mandatory) 성격이 아니라 수혜적(incentive)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공동협약에 사용후핵연료관리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성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기준은 IAEA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기준체계의 최상위 문건인 방사성폐기물 안전 기본 방침(Radioactive Waste safety Fundamentals)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협약의 주요의의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건전한 관행이 계획 및 이행 되도록 보증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통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안전문화의 창달을 열망하며,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보장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 양국간 및 다자간 협력체제와 수혜적인 본 협약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 제고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의 욕구와 수혜적인 본 협

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기존의 체제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 추진 경과

3.1 조직회의

2001년 6월 18일 발효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공동협약의 제1차 검토회의(2003년 11월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회의가 체결국 30개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IAEA 본부에서 2003년 4월 7일 개최되었으며 IAEA 사무국의 원자력안전담당사무차장인 T.Taniguchi는 금번 조직회의에서 본 공동협약(Joint Convention)의 구체적 시행방안인 국가보고서의 검토방법과 검토회의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였고 그 당시 42개국이 공동협약에 서명하였고, 비준을 마친 체약국이 30개국임을 보고하였다. 이어 조직회의 의장으로 캐나다의 원자력위원회인 George Jack 박사를 선출하

였고 부의장으로 K-L Sjoblom 박사를 선출하고, 준비된 의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1차 검토회의를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본회의 및 그룹회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결정하고, 본회의 및 그룹회의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또한 본회의 의장 및 부의장, 그룹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검토회의 진행에 관하여 의장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룹회의는 총 5개 국가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은 3~5개의 원전보유국을 포함한 6~7개국의 체약국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를 캐나다, 평가리,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와 함께 제5국가그룹에 배정되었다. 본회의 의장단구성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참조)

3.2 우리나라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2년 7월,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등 유관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로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전협약

검토회의 의장	Mr. Laurence Williams(영국)			
검토회의 부의장	Ms. Diana Clein(아르젠티나), Mr. Damir Subasic(크로아티아)			
	그룹 의장	그룹 부의장	Rapporteur	Coordinator
제 1 그룹	스웨덴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미국
제 2 그룹	벨라루스	루마니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제 3 그룹	한국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제 4 그룹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제 5 그룹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듬해 5월 5일에 IAEA로 제출되었다. 국가보고서는 국가원자력정책 및 계획을 포함한 서론, 협약의무사항에 대한 조항별 평가, 안전성증진을 위한 활동계획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체약국 국가보고서 검토

각국이 IAEA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검토회의 전에 사전검토를 위하여 타 체약국들에게 배포되었다. 각 체약국은 이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질의를 검토회의 개최 2개월 전인 2003년 9월 3일까지 해당국 연락담당자와 해당국이 소속된 국가그룹 총괄자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에 한시적으로 검토회의 대책반을 구성하였다. 검토를 위한 전략으로는 원전 보유국, 인접국 및 처분장 운전 경험국 등을 포함한 검토대상 우선순위 국가를 설정하여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비준서 기탁국(33개국) 중 심층검토국/약식검토국/임의검토국으로 구분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검토 후 질의 및 의견서를 작성한 후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미국 등 23개국 보고서에 대하여 총 125개의 질의를 발송하였다.

4.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제1차 검토회의

4.1 회의 개요

검토회의는 각 체약국의 협약의무 사항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약규정에 따라 개최된 회의로서, 2003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6월 18일 발효일 기준 체약국 32 개국과 검토회의 전에 비준한 일본을 포함한 총 33 개국에서 347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OECD/NEA에서 참관인(Observer)의 자격으로 2명이 참석하고, IAEA 사무국에서 13 명이 참가하여 총 362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문병룡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참사관을 수석대표로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로 구성된 13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4.2 개회 본회의

검토회의 의장인 Mr. Williams(영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장)의 개회선언, 인사 및 참여현황 등을 소개하고 IAEA 원자력안전사무차장인 Mr. Taniguchi의 개회사발표가 있었음. 검토회의 의장은 지난 조직회의에서 선출된 의장단의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회의 일정을 채택하였다.

총회의 의장인 Mr. Lawrence Williams는, 본 검토회의 기본목표는 세계적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체약국보고서 검토과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교류하고 운영관리 모범사례(Good Practice)를 가능한 많이 도출하고 참여국 모두에게 발전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하였다.

IAEA 사무차장인 Mr. Taniguchi는 개회사를 통하여 금번 국가보고서 검토회의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원자력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협약의 중요한 요소는 자체평가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조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검토회의 참여를 모든 체약국이 이견 없이 승인하여 개회총회의부터 공식적으로 검토회의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OECD/NEA의 참관승인과 국가그룹 회의 의장단 추인하였다. 본회의 의장으로 Mr. Lawrence Williams (영국 원자력 안전 규제청장), 부의장으로 Mrs. Diana Clein (아르헨티나), Mr. Damir Subasic (크로아티아) 2인을 선임하였고 5개 그룹별로 2003년 4월 조직회의에서 지명된 의장단을 추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제3그룹 의장국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신재인 박사가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4.3 국가그룹별 토의

체약국들은 2003년 4월 조직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5개 국가그룹에 분산·소속되어 그룹별 토의에 참여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각 조항별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을 상세히 수록한 국가보고서를 2003년 5월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공동협약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AEA와 각 체약국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간 타 체약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접수된 우리나라

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총 105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은 규제의 독립성,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충당금,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정책 등 이었으며, 특히 우리 보고서에 대한 체약국의 평가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비상훈련 실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통합정보망 구축 등에 대해서 타국가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받았다.

4.4 최종 본회의

5개 국가그룹의 보고자는 그룹별로 수행된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룹회의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구두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구두보고서는 해당 그룹회의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사항과 각 국가별 토의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자의 발표 후 각 국가별로 질의 및 토의가 있었다.

그룹별 발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법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국가보고서가 잘 작성되었으며 타 체약국의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여 협약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종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의사규칙 및 제반지침의 개정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의장은 각 체약국들로부터 개정의견을 접수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또한 특별관심사항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나 재사용을 위한 규제해제(Clearance)기준에 대하여 국제사회간 서

로 공통된 기준을 갖기 위하여 공동 노력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우라늄 mining과 milling 폐기물 그리고 NORM(천연 방사성물질)이 본 협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적당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성평가를 위한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IAEA 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각국의 계획과 실행단계는 각국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미 처분단계에 있는 국가도 있고 또한 개발단계에 있는 나라도 있으며 아직 계획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각국은 지역 간의 처분(Regional solution)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역간 처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간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얻지 못하였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관한 토의에서 제2차 검토회의를 대비한 국가보고서제출은 제2차 검토회의 7개월 전인 200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차기 조직회의는 2005년 11월 7일에 개최하며, 제2차 검토회의는 2006년 5월 15일부터 2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4.5 검토회의 요약보고서 채택

검토회의의 결과 문건인 요약보고서는 개회 본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서식대로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총 8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으로 검토회의 개최근거, 회의 참석현황 등 일반적인 상황과 검토체계, 회의 목적의 달성을 여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론으로는 외적요인, 협약의 범위, 일반안전

조항, 규제기관, 국경 간 이동, 안전성증진, Open-ended working group에 대한 내용과 최종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본 검토회의에서 채택한 요약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약국들은 일반적으로 협약과 검토회의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검토회의를 통하여 여러 체약국가들은 자국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상당기간 앞당겼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여러 체약국가들은 국가보고서와 검토회의의 준비과정이 비록 시간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 체약국들은 국가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검토회의는 타국의 좋은 사례를 논의함으로서 자국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체약국들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명확한 법적 체계,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기능, 적법한 사업자, 책임과 책무의 명확한 규정,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적당한 재정계획 등이 필수적이며 후세대에 부과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한다.
- 1차 검토회의를 통하여 체약국들은 금번 협약범위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차기회의는 보다 개선된 회의가 될 것임을 확인

하였으며 전반적 진행과정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약국들은 앞으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인식하고 협약의 이행이 각 국의 책임임을 인식하였다. 체약국가는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보다 진전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3년 뒤 차기 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 결언

본 공동협약의 이행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는 한 그리고 본 협약이 소멸되지 않는 한 협약 체약국으로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그리고 철저히 이행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에 관한 국민이해 부족 등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동 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 의무이행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부의 주도 하에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본 공동협약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및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으로 자부할 수 있는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체약 당사국의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투명성 제고에 동 공동 협약의 제정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동 협약상의 책임과 의무는 체약국에만 적용되는 국제협약의 한계가 있으나, 동 공동협약은 국제적인 규범이므로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인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전 세계적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향상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난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원만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므로 향후 2005년 5월에 개최될 동 협약의 제2차 검토회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나라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국제적 표준이 될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협약의 의무사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수준이 국제적 수준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기울여온 원자력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외교노력을 이어가고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 한다. **KRIA**